

2026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「풍수해보험 지원」 모집공고

풍수해,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6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풍수해보험 지원」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5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모집 및 신청접수

- 가. 신청기간 : 2026. 6. 15.(월) ~ 2027. 5. 31.(월) <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>
나. 지원대상 : 신청기간 내 풍수해보험에 신규가입 또는 재가입한 도내 소상공인
- 본 사업은 참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
 - 보험 가입 가능 여부, 인수기준 등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
 - 단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불가
- 다. 신청방법 : 참여 보험사 중 1개사를 선택하여 신청
라. 참여 보험사 및 [신청문의](#)

연번	보험사	문의 연락처
1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070-7707-3005
2	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010-5342-9335
3	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	070-4001-9466
4	DB손해보험주식회사	02-6952-6230

※ 보험사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마. 사업문의 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063-717-1305)

2 지원내용

- 가. 지원기간 : 2026. 6. 15.(월) ~ 2027. 5. 31.(월) <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>
나. 지원규모 : 약 1,200명 정도

- 다. 지원내용 :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(전체 보험료의 50%)
- 풍수해보험료는 가입 목적물, 가입금액, 건물 구조, 면적, 사업장 소재지 등 위험요소를 종합 반영하여 산정되며, 가입자별 보험료 상이
 - 본 사업은 ***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**과 연계하여 지원함

***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**

- 법접근거 :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 등
- 보장내용 : 시설/집기(3천만원 한도), 재고자산(2천만원 한도)

3 지원절차

가. 지원절차



나. 지원방법

- 소상공인은 참여 보험사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및 자부담 보험료 지원 신청
- 적격 여부 검토 후 자부담 보험료를 참여 보험사에 지급

※ 자부담 보험료 지원신청서, 소상공인확인 서류(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) 제출 필요

▶ 신청 서류 양식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참여 보험사에 문의

4 유의사항

- 가.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
- 나. 소상공인은 참여 보험사 중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보험가입 및 자부담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야 함
- 다. 신청정보 오기재 및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(지원대상 제외 등)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- 라.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 귀속됨

붙임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 문화에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